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98년도 제2차 학/술/회/의

- 일시 : 1998년 9월 1일 (화) 오후 5시 •
- 장소 : 기독교 회관 2층 강당 •

주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02-921-4092)
(상임대표 이창복, 문정현, 김상근, 청화, 김현, 이해동)

주관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70번지 연남빌딩 402호 (우) 110-550 (전화) 742-3180 (FAX) 742-3181 (천리안) CHUSA (NOW) 열사정신

인민대표 | 서울주민총회

의원 을정동신고 을주 10월 10일

의회 | 숨 | 1호 | 151 | 코너 80

- 150 후오 (後) 151 숨 1801 : 151 ·
- 150 중 152 뜨거운IC : 소중 ·

● 자료집 순서

- 민족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주모사업회 / 이창복 … 2
-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 이창수 … 4
- 특별법 법안 / 민변 … 14
- 국가 보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북한의 사례와 비교 검토 / 김삼웅 … 28
-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 … 34
- 참고자료 / 제3차 주모 및 기념주간 일정

목 차

식 순

개회 및 인사말

사회 박원순 (변호사 ·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조연설 민족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주모사업회 … 이창복 (열사범추위 상임대표)

발제 1.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2. 특별법 법안 … 민변 (윤기원, 정태상, 이상훈 / 대표발제 윤기원 변호사)

3. 국가 보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북한의 사례와 비교 검토 … 김삼웅 (친일문제연구회 회장, 서울신문 주필)

토론회

한충목 (열사범추위 집행위원장)

곽노현 (방송대학교 교수)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용환 (변호사)

천정배 (국민회의 국회의원)

이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질의응답

특별법제정 촉구서한 치택

기 | 조 | 연 | 설

민족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주모사업에 우리 모두 힘있게 나섭시다.

이창복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신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98년도 제2차 학술회의이자, 학술회의를 처음 개최한 97년 이후 5차례에 해당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지난 네 차례의 학술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특별법을 성안하여 발표하고, 범국민적 추모사업을 본격화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운동을 위해 애쓰시고, 오늘과 같은 진전된 학술회의를 준비해 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는 네 차례에 걸친 학술회의를 통해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해 왜곡된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고,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국가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의문의 죽음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모단체 연대회의와 유가협 등 관련단체들이 주도가 되어 정밀로 열심히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속에서도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관련 전문가와 단체, 가족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직도 이 문제는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관심사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그 성격상 관련 당사자들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차원의 문제임에도 그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술회의는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정초시켜 이 사업이 명실공히 범국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학술적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사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외세에 대항하여 민주발전을 기하기보다는 외세에 편승하여 국민을 배신하고 독재를 행사해 온 세력들의 불의에 항거한 위대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4.19 민주혁명과 5.18 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50년만에 이룩한 민주적인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자주권을 되찾고 민주 발전과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 대중은 한결같이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국민은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개창하였고, 이제 통일 시대를 향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8.15 53주년을 기해 발표한 소위 '제2 건국선언'이 의미하는 바 역시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 통일 시대를 향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올바른 과거청산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총체적인 개혁을 통해 과거 독재시대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일, 경제의 안정성장과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지역과 계층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여 사회통합적인 시민공동체를 건설하는 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민주, 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요체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거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사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개인 차원의 죽음이 아닌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사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은 독재정권에 의해 왜곡되어졌던 현대사를 바로 잡는 성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이루어 내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자행한 민주 인사들에 대한 테러의 진상을 밝혀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와民間 차원에서 동시에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하여 그에 따른 노력들을 하여야 하며民間 차원에서는 지금까지의 협소한 범위가 아닌 범국민추모사업회를 건설하여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뿐 아니라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가며 이루고자 했던 염원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그 어떠한 화합과 화해도 또 다른 갈등을 예정한 것일 뿐 진정한 화합일 수는 없다는 것을 다짐하며,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추모사업회 건설을 위해 진정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발 제 1

외국 사례에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이창수 ·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1. 문제제기

과거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다시 재정립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그리고 과거 문제가 부도덕하거나 반인륜적인 폭압과 결부된 정치적 문제라면 그것은 미래 이전의 문제가 된다. 특히 군사통치를 경험한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된 경우가 하다하다는 점을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박제화된 과거의 문제로 둘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세력을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많은 피해자(victims)¹⁾가 나타났다. 군사정부가 민중의 투쟁과 저항으로 물러나고, 문민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정당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재야라고 불리는 민중민주 민족운동 진영은 반독재·반파시즘 투쟁을 벌여 왔지만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대단히 천박한 수준이다. 특히 일반 대중의 이익을 수렴, 조정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정치권의 과거 청산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개념규정은 아직도 여러 의견들이 있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산하 희생자 배상 및 명예회복 소위원회(Committee of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가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Bill)에 따라 96년 9월 작성한 긴급잠정보상 조치상의 정책 개요(Policy Framework for Urgent Interim Reparation Measures)에서 정의한 피해자에는 총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사면을 보장하는 정치적인 목적과 결부된 법률 또는 고통받았던 자를 돋거나 이런 사람의 희생을 막고자하는 일을 방해한 자의 행위로 인해 물리적인 위해(危害), 정신적 위해, 정서적 고통, 금전상의 손실, 인권의 실체적인 축소(substantial impairment) 등의 형태로 손해를 경험한 개인과 그 친척 또는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청산의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진실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런 진실을 근거로 역사적인 왜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편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과거청산 문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 군부와 자본 중심의 경직된 사회정치 구조 속에서 다수의 민중들이 민족적 자존심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인 원상회복과 제도적인 정당한 배상(just measures of reparation to victims)²⁾, 그리고 정치적 명예회복으로 종결된다.

이 글에서는 남아공과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문제를 국가권력과 사회세력간의 갈등과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과거청산의 과제는 역사적 실천에 대한 평가이며 이것은 당시 수구세력과 이를 타개하려는 진보세력간의 투쟁으로 반전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청산이 사회적 이슈 또는 진보진영의 합의된 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군사정권의 몰락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또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단순히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미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뿌리를 그대로 두고 가지치기만으로 포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이 글에서는 대항세력이 우세한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구세력과의 타협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있는 남아공이 검토될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사후보장을 위해서 제도개혁을 통해 민주화를 추진했던 아르헨티나로 대표되는 남미의 경험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대항세력과 수구세력간의 대등한 경쟁을 벌인 바 있는 북아일랜드의 청산 방식은 우리 사정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는 한 국가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한 국가와 그 집권자들을 단죄하고 청산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겠다. 일국적인 차원의 독재자나 군사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행한 반인륜 범죄와 2차세계대전 이후 전범재판의 대상을 삼았던 경험들이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힘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미래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과거청산은 당위인가 현실인가?

- 2) 공식적인 조사란 국가기관에 의한 전면적 객관적 사실조사를 뜻한다. ; 박원순,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 부당한 권리의 '불처벌(IMPUNITY)'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열사회보>> 98년 4월호 통권 제18호, p23,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서울
- 3)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appropriate measures of reparation)을 추구하고 있다. 남아공의 국민화합과 화해 촉진법에서 말하는 적절한 배상이란 보상(compensation), 호의적 변제(ex gratia payment), 반환(restitution), 명예회복(rehabilitation) 또는 표창(recognition)의 형태를 말한다. 남아공은 피해자 면에서 우리 사회에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협소하게 얘기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청산에 대한 전면적이고 일반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하고, 따라서 과거 군부정권이나 부당한 사업주에 대한 개인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에 대한 배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정당한 배상은 손해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대상(代價)(full and fair equivalent)을 의미한다.

'과거청산'이라는 용어속에는 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이고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통상 정치권력과 민중 또는 시민 사회간의 현실에 대한 타협이나 과거나 미래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필수적인 요소는 정치권력이다. 정치권력이 빠진 과거청산은 없다. 시민사회가 아무리 '과거청산'을 말을 해도 정치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과정상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과거청산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희생자들을 어떤 위상으로 위치지우나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논리적·사변적인 방식을 취하기 보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1 이행기의 복잡성을 민중 주도로 극복한 남아공

남아공은 94년 4월 다인종 참여 총선을 계기로 흑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종주의적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유과제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아공의 과거청산은 여러 가지 복잡하다. 남아공은 86년 국가 비상시태를 선포하고 흑인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EU 국가들은 대남아공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국민 대다수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거부투쟁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90년 데 클레르크는 ANC를 비롯한 60개 이상 반정부단체 합법화와 넬슨 만델라 ANC 의장 석방, 비상시태 해제조치를 취했다. 1992년 백인민의 선거를 통해서 백인 통치의 종식을 인정하고, 1993년 7월에는 인종평등, 3권분립, 연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에 따라 다인종 임시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94년 4월 다인종 총선이 실시되어 흑인정권이 수립되게 되었다.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라는 헌법기구를 설치하여 과거 청산 과제를 수행했다. 법적 근거는 잠정헌법 마지막 조항과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Bill)이다. 주로 이 위원회는 1) 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 2) 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인권 침해, 폭언, 기해 행위에 대한 사면 허가 3) 희생자들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 회복을 위한 보상 조치의 권고를 수행한다. 이런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인권 침해 소위원회(Committee of Human Rights Violations), 사면 소위원회(Committee on Amnesty), 희생자 배상 및 명예회복 소위원회(Committee of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 활동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인종 갈등을 실제로 해결했느냐의 문제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Business Day지가 MRA (Market Research Africa)를 통해서 전체 소득수준과 인종 그룹의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TRC 활동이 오히려 인종갈등에 유해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⁴⁾ 하지만 남아공 TRC의 활동을 2년의 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⁵⁾

4) <<Business Day>>, 1998년 7월 27일자 재인용, <http://www.truth.org.za/reading/s980727a.htm>; 이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남아공 국민들의 2/3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총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이 위원회가 행한 청문회가 인종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9%가 위원회 청문회가 인종 갈등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시켰다고 보는 입장도 38%를 나타냈다. 그리고 인종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하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도계는 위원회가 인종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74%가 이에 찬성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가운데 이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비율은 72%로 흑인과 유색인 응답자 62%도 부정적이었다. 백인 70%는 위원회 활동이 인종간의 공생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인도계 5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흑인 및 유색인들도 이 질문에 대

만약 이 면접조사가 정당하다면 과거 청산의 주체와 이를 대행하는 국가 기관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된다. 이것은 진실규명 자체를 규명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넘어 이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유, 즉 과거를 인정하고 처벌 없이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남아공과 같이 과거 청산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그것도 그 피해자들이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과거 인권침해나 국가 권력의 권력남용을 규명하는 일과 사회구조적인 인종간의 불신과 대치 상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혁명적인 상황이 결여된 제도 아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아주 복잡하다.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이행기의 복잡성은 현재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점은 권력 변화과 이에 근거한 진실규명 작업은 또 다른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감정과 국가주도의 과거청산 활동간에 일정한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정치세력간의 타협 때문이다. 특히 ANC 정권과 국민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이 위원회의 활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수년 동안 ANC의 폭파 등으로 죽은 백인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의 정책의 수혜집단인 백인 중산층들은 이 위원회의 활동이 지극히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흑인 대중들도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이 국민화합에 순기능했다는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과거 보안군의 인권침해는 침해 정도가 공포수준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면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인종적 지역 벌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힘과 국제사회의 여론에 힘입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남아공의 과거 청산 과제는 이제 일단락 되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과거 피해사례에 대한 진술서 2만 1천 건을 접수하고 대대적인 사면을 이루었다. 아직 1천 건 이상이 사면청문회를 거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종결하고 10월까지 활동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화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성공을 거두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즉 흑인백부의 구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정권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인종차별 정책을 해소시키는데는 법적인 해결과 진실규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통합에 저해하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과거 청산의 과제만큼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공동체내의 빈부 격차 해소 등과 같은 경제적이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서 거의 50%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흑인 응답자의 22%만이 긍정적인 답을 보였다. 그리고 흑인 60%만이 위원회 활동이 공정했다는 쪽에 찬성했다. 특히 동케이프, 북 케이프 및 북서 케이프에서는 응답자 70%가 위원회 목표 달성을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약 43%이고 계속 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5) 남아공 지식인 사회에서도 이번 조사에 대해서 공통된 입장은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이번 조사의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이 전개된다. 이번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남아공 국민들이 이 위원회의 존재성을 거부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이번 조사를 수행했던 Business Day지의 Drew Forrest 정치부장처럼 이 조사 결과의 합의가 '위원회에 대한 태도가 인종간에 깊고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는 백인들은 위원회 설치 자체가 나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흑인의 과반수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Business Day>>, 98년 8월 3일자를 보라. : <http://www.bday.co.za/98/0803/comment/e8.htm>.

2.2 정치권력의 개편은 과거 청산을 위한 전제임을 증명한 아르헨티나

남미 지역의 과거 청산과제는 주로 실종(disappearances) 관련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남미의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남미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가운데 칠레와 아르헨티나 가운데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실종자 가족들 중심으로 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국제사회에 소위 '불처벌'(impunity)을 직접 제기하여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유심히 볼 문제가 있다.

195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낙후하게 되었다. 군사독재로 인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납치, 고문, 살해, 강간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냉전질서가 강화되고 쿠바혁명으로 중남미는 미국의 국제안보질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안보지상주의가 횡행하게 되었다. 1976년 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고 인권침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기 시작했다. 실종자 수는 3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실종자들 가운데에는 부모와 함께 납치되었거나 비밀 구금장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수백명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월 광장 어머니회(또는 할머니회)를 중심으로 실종된 어린이들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법원에 탄원하고 일반 대중 앞에 직업 탄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의사 및 심리학자 등 18명이 기술적인 팀을 만들어 이 활동을 지원했다. 이런 일련의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활동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의 시민사회는 급격히 성장하였다. 과거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을 주도했던 오월광장 어머니회 소속 간부들은 국회에 진출하기도 하며 대선도 꿈꾸고 있던 실정이다.

이외는 반대로 1983년 9월 22일 비뇨네 과도정부는 '국민화해법'을 통과시켜 1973년 5월 25일부터 1982년 6월 17일 사이에 벌어졌던 정치적 동기와 목적에 의해 군부 또는 정치적 반대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든 형사적 범죄에 사면을 가했다. 이후 알폰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사면법을 무효화시키고 대통령 직속 전국실종자위원회(CONADEP)를 설치했다. 그리고 1987년 군부와 타협책으로 '직무준수법'을 만들어 명령 이행을 한 중령이하의 군인들의 직무상의 행동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30일 이내의 반대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고위 장교도 무죄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후 1989년 메넴 정권은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을 사면했다.⁶⁾

아르헨티나의 과거 청산 문제가 군부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두 명제사이에 국민적인 혼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군부의 영향력이 상존한 상태에서 민주이행을 했다는 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것은 마치 김영삼정부가 과거의 집권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 집권 하여 결국 과거청산이나 학살 책임자 처벌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구제를 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남아공과는 달리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는 군부 중심의 구세력이 정치적인 실세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모든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자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⁷⁾

6) 박원순,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 부당한 권력의 '불처벌(IMPUNITY)'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열사회보>> 98년 5월호 통권 제19호, pp. 11-13,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서울

따라서 남미형 과거청산 모델은 민주화 이행이 곧 과거 불법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단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논리와 군부 또는 군부 출신의 정치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과거 군사정부하에서 피해받은 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의 문제는 정치권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여론이나 시민사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각국의 민주이행이 이루어 졌다. 물론 이것은 자체적인 민중적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거 청산이 기존의 정치권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를 통제할 만한 대중적 정치력도 적었다. 따라서 여론에 밀려 민간정부가 과거에 자행된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둘 때도 언제나 그것은 형식적이면서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⁸⁾

따라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형 과거 청산과제는 실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분야를 과거 억압세력이 주도하는 선상에 있는 남아공과 다른 위치에서 과거 군부세력⁹⁾이 입법과 사법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 남미의 상황을 고려 하면 정권이 피해자¹⁰⁾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묻어 두자는 말과 상통한다. 따라서 피해사례가 조사되어도 그것은 불처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유의해야 한다.

남미의 과거 청산에 핵심인 인권 가해자 즉 과거 군부 인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곧 현 정치권력의 개편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처벌하지 않는 문제는 실제로 이 불처벌¹¹⁾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원

7) 남아공에서도 백인정권이 정치적 탐욕을 하면서 이미 사면법을 공포하여 과거의 인종적 편견에 의한 국가공권력 남용자들에게 대한 사면을 단행했지만, 디수 흑인대중들이 힘에 기반한 협상에서 '국민통합과 화해촉진법'으로 대체되었다. 물론 남아공에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세력의 조직적인 반대를 제어할 수 있었으며, 남아공의 정치지형이 뚜렷하게 인종적인 갈등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 선거에서도 대중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각될 수 있었다. 반면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구세력인 군부가 자신들의 초헌법적 행동에 대해서 법적 사면을 단행하고 이를 전제로 권력의 민간 이양을 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민간 정부의 성격이 군부가 아니라는 점과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군사정부와 차별될 만한 정치경제적인 대표세력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도 1978년 과거의 각종 실종사건에 대해서 사면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피노체트 집권기의 모든 범죄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종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칠레에서는 이 사면에 관해서 개정권을 갖고 있는 상원을 군부가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지 못하게 한다.

8) 알폰신 정부하에서 설치된 전국실종자위원회(CONADEP)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별 기구로 설치되어 자체에 소환권, 기소권이 없는 기구였다. 따라서 남미형 과거 청산에서 중요한 처벌의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남겨 두었다. 또 칠레의 아일린 정권도 1990년 5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설치되어 법적인 구속력 면에서도 과거 군부들의 '사면조치'를 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배상의 공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 졌다.

9) 최근 칠레의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들은 사면을 전제로 과거의 진상규명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 과거 군부정권하에서 피해자들 즉 실종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세력 중심의 새로운 정치권력을 수립하지 못한 과정에서 과거를 청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청산 의지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주로 진상규명에 기초하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을 도출하기보다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치세력화 하지 못한 정치적 반대자의 실력에도 문제가 있다.

11)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불처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그중에서도 1997년 8월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 소위원회(Sub-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에서는 Guisses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측면에서 불처벌의 문제를 보고(E/CN.4/Sub.2/1997/8) 있으며, Joinet는 이 문제를 시민·정치적 권리 측면에서 보고했다. (E/CN.4/Sub.2/1997/20).

회 소수자 차별방지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남아공은 차별방지위원회에서 제기된 결의안을 수용해 차별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차별방지 정책을 확립하는 과정을 밟았다.

3. 두 사례에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 검토

앞에서 남아공과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과정을 개괄해 보았다. 남아공은 과거청산 과정을 종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민적인 화해를 이루는데는 실패했다고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많은 남미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 또는 퇴행하는 단계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두 나라의 과거청산 방향이 올바로 정립되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나라는 모두 사법적인 처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진실규명만으로 청산을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과거청산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의 문제와 피해자의 배상문제는 또 과거 청산 과정에서 어떻게 위치지워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또 어떤 조건하에서 올바른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재검토하려 한다.

먼저 가해자 처벌이 과거 청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검토해 보겠다.

남아공은 기본적으로 인종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과거 청산의 주된 과제였고, 이를 위해서 과거의 진상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사면이라는 형태로 일괄처리하고 대신 가해자들의 자기고백과 사실적 진술을 요구했다. 따라서 남아공의 과거청산 과정은 그 목표가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있었다. 이런 남아공의 과거청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인종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흑인이 광범위하게 피해대상자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흑인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백인정권과의 과거청산 방식에 대한 합의는 곧 과거 피해자 그룹이 권력의 담당 주체로서 국민적 통합의 의무를 남겼다. 따라서 정치적 과제로서 국민통합이 새로운 정치권력을 맡은 흑인집단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남아공식 과거청산 방식인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피해자 집단이 광범한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조건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보복적 수단으로서의 처벌문제는 개별 수준에서 인내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고, 피해자 개인수준에서는 결국 배상이나 명예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Guisses는 이 최종 보고서에서 △ 노예, 식민, 인종차별, 제3세계의 문화적 악탈, 부채, 구조조정프로그램, 경제제재, 부패, 국가 재정과 관세 부정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인 침해 관행을 검토하고 △ 이들 관행의 결과 즉 개인적인 일할 권리, 충분한 양식권, 적절한 주거권과 교육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보건환경, 개발과 같은 집단적 권리의 침해를 분석하고 △ 이들 침해를 소멸 시효가 없는 국제적인 범죄로 선언할 것,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에 관한 수용 가능한 의정서를 채택할 것, 각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사항을 비준할 것, 공공문제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할 뿐아니라 분명한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할 것 등, 이런 현상에 대응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했다.

Joint 보고서는 민간단체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수정된 첨부자료 2에는 '불처벌에 맞선 행동을 통한 일련의 인권보호원칙들'(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불처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비사법적 사문(查問)위원회의 위임명령(원칙 제7조); 혐의자에 대한 보증(원칙 제8조), 자신들을 위해서 조사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보호(원칙 제9조), 비사법적 사문위원회의 보고서 발행(원칙 제12조), 사법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무(원칙 제18조), 사면에 관한 제한과 기타 조치(원칙 제25조), 배상 의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원칙 제33조) 등이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대로, 과거의 가해자 그룹이 법적으로 떳떳한 상태에서 이를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적인 통합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사면한 것이 오히려 국민 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아르헨티나형 과거 청산 방식은 군사정권이 기존 야당 세력과 정치권력을 공유하는 전제로 불처벌을 요구했고, 또 과거의 모든 사건을 정치적 또는 안보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이 다수라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사람들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다. 과거 청산의 주체는 주로 민간정부가 되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치권력이 과거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군부출신 정치권과의 긴장과 타협을 거쳐야 하는 정치권의 문제가 된다. 특히 불처벌의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총체적으로 불처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민사회는 처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과거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통합이나 화해보다는 과거 군부의 처벌 또는 불처벌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 힘의 상대적으로 커져 있지만, 권력을 담당할 정치세력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제도권들에게 과거 청산과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과정은 주로 이를 제기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시민社会의 도전에 대해서 제도권의 응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정부도 결국은 경제논리, 안보논리, 군부 재등장 논리 등을 들어 과거 청산 문제를 포괄적인 명예회복 수준에서 종결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정치질서의 파괴를 요구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최근 오월광장 어머니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독자적인 대선준비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피해자들이 과거에 대한 진상 요구투쟁이나 처벌 요구투쟁에서 정치적인 독자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배상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남아공은 이 배상문제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적절한 배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그 소요자금은 정부 출연과 민간 모금을 통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담보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남아공은 오히려 생산력을 높이는 과제를 흑인정권이 안고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자이면서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의 가해자인 부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중에 기반한 정권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나 재분배정책의 강력한 수행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기 쉽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아직까지 피해자의 배상이나 명예회복 문제는 과거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불처벌의 문제와 진상규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에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아공의 경우처럼 처벌의 문제를 사면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의 문제로 과거청산의 경로를 넓게 되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피해자와 과거 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 청산 과정에서 피해자 배상과 명예회복 등의 문제는 완전한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 또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배상문제는 과거청산의 문

제리기 보다는 정치권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재원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두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제도 정치권의 제도적인 타협만으로 과거청산의 중요한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 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과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이 국민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 외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올바른 과거 청산 방식

우리 나라의 과거 청산 과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경험이 있다. 과거청산의 시점에 대해서도 합의된 의견이 없을 뿐더러, 청산의 내용도 단순한 인권의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와 계급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문제가 복잡하게 얹혀 있다.¹²⁾ 또 청산할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공유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운동을 벌여 왔다. 특히 지난 96년 12월 16일 결성된 사회시민단체 15개로 구성된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과거청산 국민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과거 청산 문제를 사회적으로 전면적인 문제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 활동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과거청산 국민위원회는 그 방향을 △ 인권침해 △ 진상규명 △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요구 운동 △ 과거 부정적인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폐 운동을 주요사업¹³⁾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미흡했다. 이 위원회 활동이 미흡했던 원인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 청산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부족했으며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에서의 실패가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위의 두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들의 정치적인 진출 또는 세력화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청산의 문제는 제기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공식적인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는 언제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에 있었지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학살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남미형 모델과 진상규명이라는 남아공형 청산모델을 조합한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없었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청산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사회적 자원 (social resources) 또는 공공재 (public goods)를 제공하지 못했다. 즉 무엇 때문에 과거 청산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 예를 들어 국민통합, 지역적 화해, 또는 민족통일, 계급적 갈등 해소 등과 같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과거의 것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청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에 앞서 이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 또는 정치적인 뚜렷한 흐름이 있어야 가능해 진다. 제도 정치권이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의 처벌 문제나 진상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관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의 즉각적인 구제와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뚜렷한 과거 청산 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 수준을 벗어나 이를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화¹⁴⁾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일각에서 이른바 '포괄적 청산론'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고, '과거의 것'에 대한 방치를 전제로 미래를 정치권 중심의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돌리자는 의견에 다름 아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은 전문적 능력의 문제나 제도적인 강제조사권 부여 등등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과거 청산 문제는 가해자의 처벌 문제나 진상 조사 문제는 뒤로하고 자칫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의 문제로 흐르기 쉬운 상태에 있다.

진정한 과거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할 과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9) 법령체계의 다양화와 청탁금지법

12) 손호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열사들을 두 분류로 하고 있다. 하나는 민족민주운동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과 그 과정에서 여론과 시대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서 분신을 한 열사로 구분하고 후자를 한국적 특징이라고 했다. ; 손호철, <민족민주열사 주장의 정당성>,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1997년.

희생자의 범위도 소극적으로 혐의의 피해자라고 볼 때와 광의의 피해자 나눌 수 있는데 후자에 대한 연구나 규명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13) <<인권하루소식>> 1996년 12월 17일자, 1면, 인권운동사랑방, 서울

14)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인권단체 구성원들이 특정 정당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진출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발 제 2

특별법 법안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 민족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대표발제 - 윤기원 · 민변

법안 1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1. 입법취지

그동안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중 그 사인에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그 진상은 역사속에 매몰될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가 출현함과 발맞추어 더 이상 진실을 과거에 묻지 않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0. 의문사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

한 것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의(법제2조)

0. 대통령직속하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 3인씩 선출(법제3조)
0.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사 선정, 고발, 영장청구요청, 재정신청여부 등을 결정(법제4조)
0.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요청 및 소속공무원의 파견등을 요청할 수 있음(법제7조)
0.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법제8조)
0. 위원회가 관할 지방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관할 지방 법원에게 신청하여야 함(법제9조).
0. 사건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정(법제10조).
0. 위원회는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를 검사등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민족민주열사의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법제11조).
0. 검사등이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할 고등법원등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함(법제12조).
0. 자수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며, 내부정보제공자의 신변보호장치 마련(법제13조, 제14조)
0. 이 법이 만료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경지(법제15조)
0.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벌칙조항 마련(법제16조)

3. 전문(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의문사한 자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의문사”라 함은, 사람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통령은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3월내에 대통령 직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조직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직무범위)

위원회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진상 규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
2. 고발, 영장청구 요청, 재정신청 여부의 결정
3.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사요청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5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조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② 위원중 5인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독립)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 및 경비)

위원의 보수 및 위원회의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사협조요청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조사)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감정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영장청구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당해 사건의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 ①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위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 3월마다 대통령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처리)

-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자를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경우 '민족민주유공자의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신청의 예외)

- ① 위원회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전에 이 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위원회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제1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이 법률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기간동안 전항의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제공자도 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기관에서는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의문자의 진상 규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공소시효의 예외)

이 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18조(벌칙)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위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제1항, 제2항의 요청에 불응한 자.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 및 증언요구를 거절한 자.

부 칙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법 제2조의 규정된 의문사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이 법률을 적용한다.

법안 2**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1. 입법 취지**

1945. 8. 15. 해방이후 민족민주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사건별로는 명예회복 및 예우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예컨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9호, 10호에 규정된 4. 19혁명 사망자, 4. 19혁명 부상자에 관한 규정,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대부분의 희생자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분들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법안의 제목에 관하여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관련자등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민족민주”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민족민주유공자”라는 용어를 선택함

나. 민족민주유공자를 시기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있어서 1945. 8. 15. 이전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1945. 8. 15. 이후로 제한하였고 앞으로도 민족민주유공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기는 제한하지 아니함(제1조)

다. 민족민주운동의 정의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함(제2조1항)

라. 민족민주운동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라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지 아니하였다며 사망자에 한하여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제2조 2항 3호)

마. 의문사한 자도 포함시키되 다만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요청한 자에 한하여 포함시킴(제2조 2항 4호)

바. 유족의 범위, 등록 및 결정, 예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을 준용하기로 함(제3조, 4조, 16조)

사. 보상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함

아.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통일에 역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선언적인 규정으로 그쳤고 위와같은 행위시 보상금 지급 금지 등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음(제7조)

자. 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유족 대표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중 일부를 유족대표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제9조)

차.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도 협조하도록 하였음(제10조)

카.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1조)

타. 요시찰인 명부 작성등 불이익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었음(제12조, 21조 1항)

파.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였고 추진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미루었음(제14조)

하.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었음(제15조)

거. 보상금의 환수등 보착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음

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 1조)

3. 법률(안)**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법은 1945. 8. 15. 이후 민족민주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었거나 민족민주운동에 공헌한 자(이하 “민족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민족민주운동”이란
2. 이 법에서 “민족민주 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8조의 규정에 의한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결정된 자를 말한다.
 - (1) 민족민주운동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 (2) 민족민주운동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3) 민족민주운동에 특별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자
 - (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

제3조(유족등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민족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를 적용한다.

제4조(등록 및 결정)

1.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족민주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조에 의한 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3.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2항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후에 민족민주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원칙)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민족민주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반민족민주행위 금지 의무)

민족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8조(민족민주유공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에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민족민주유공자 및 유족결정에 관한 사항
 - 나.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다. 민족민주유공자 추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라. 민족민주 운동을 이유로한 불이익행위의 판정 및 고발
 - 마.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사항
 - 바.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

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가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검증 또는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명예회복

제11조(특별재심)

1.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3. 재심관할법원은 재심이 청구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면이 있었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준용한다.)

제12조(불이익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타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 요시찰인명부의 작성, 여권발급절차에 있어서의 예외적취급규정등 차별대우(이하 불이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불이익 행위 여부의 판정등)

1.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불이익행위를 당한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불이익 행위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불이익행위의 판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불이익행위로 인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족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등)

1.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민족민주유공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예우

제16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민족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내지 제7장을 준용하되 제2조 제1호, 3호, 4호에 해당하는 민족민주유공자는 “전몰군경”的 예에 따라,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민족민주유공자는 “전상군경”的 예에 따른다. 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보상금의 환수)

1. 국가보훈처장은 이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학자금(법 제 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학자금을 포함한다.) 법 제16조의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한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환수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위탁)

1. 이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별칙

제21조(별칙)

1. 제12조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조(과태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로 신고를 한 자 또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제 3

국가보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북한의 사례 비교검토 -

김삼웅 · 서울신문 주필, 친일문제연구회 회장

현대국가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국가보훈사업을 시행한다.

이것은 선진국가나 후진국가를 막론하고 문명사회에서는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고 희생한 자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의무를 지는 국가 공동체의 규범원리는 보편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국가보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보훈제도는 이승만정권에 의해 1950년 군사원호법과 1951년 경찰원호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당시 원호제도는 연금지급없이 생계부조·직업보호·수용보호 등을 실시하다가 1961년 비로서 연금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로 군인과 경찰관에 해당되는 보훈제도였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들에 대한 국가원호법이 제정된데이어 군사원호청이 설치되고 1962년에는 4·19혁명 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이 제정되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독립운동가 출신이라는 이승만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에 앞장섰다. 이어나갈하게도 친일군인 출신인 박정희정권에 의해 대단히 미흡한대로 관련 법규가 만들어지고 풍돈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①순국선열 ②애국지사 ③전몰군경 ④전상군경 ⑤순직군경 ⑥공상군경 ⑦무공수훈자 ⑧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⑨4·19혁명시망자 ⑩4·19혁명부상자 ⑪순직공무원 ⑫공상공무원 ⑬특별공로순직자 ⑭특별공로상이자 ⑮특별공로자 등이다.

이외에 광주민주항쟁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과 통

일운동, 노동운동 등 반독재 투쟁으로 희생된 민주열사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보훈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민주열사들에 대해 군사정권의 보훈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자부해온 김영삼정권이 민주열사들을 외면한 것은 이승만정권이 항일 애국지사들을 외면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50년만의 여야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서울신문이 '민주열사열전'을 기획 연재하면서 국회에서 군사독재 시대의 의문사 규명을 비롯하여 민주희생자들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한 맷한 유족들의 노력의 작은 결실이라 할 것이다.

보훈사업의 남북한 비교

남북한은 각기 헌법에 보훈제도의 관련조항을 두고 있는데 남한은 헌법 제32조 6항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하여 취업지원 한가지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그들의 헌법 제 75조에 "혁명투사, 혁명렬사 가족, 애국열사 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여 그 이념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남한은 독립된 체제와 제도를 갖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셋째,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 기구를 보면 남한은 초기에는 보건사회부, 총무처, 체신부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각기 나누어 업무를 관장하다가 국가보훈처의 창설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은 업무별로 관장 기구가 다르다.

넷째, 남북한 모두 항일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 점, 한국전쟁 등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당한 군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제대군인을 포함시킨 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을 포함시킨 점등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으며, 남한에서는 전몰·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시망자·부상자, 기타 준용대상 공무원이, 북한에서는 8·15 이후 남한에서 미국반대투쟁을 한 자, 인민군대에 복무하는 현인 군인의 부양가족, 한국전쟁시 민간인으로 참여하여 희생된 자의 가족 등을 보호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일독립운동이라 하더라도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남한에서는 민족주의 계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계열 중심으로 포장된 점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전쟁 희생자의 경우 상호 적대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므로 남북통일시 이러한 국가유공자의 선정에 따른 갈등의 해소방안 혹은 동질성 회복방안 등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급여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남한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교통수송시설의 이용이 있고 북한에만 존재하는 것으로는 세계감면, 생활필수품 지원 등이 있다.

여섯째, 북한의 통계는 구할 수 없어 예산규모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남북한 보훈제도 비교도표

구 分	남 한	북 한
기본이념	공훈선양 및 예우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	국가, 사회의 특별한 보호
제도의 특징	보훈제도 별도 독립운영	사회보장의 개별법 운영
대상범위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 무공, 부훈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 4·19혁명사망, 상이자 - 순직,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 상이, 공로자 제대군인 반공귀순상이자	혁명투사 혁명열사 가족 애국열사 가족 전사자 가족 영예군인 후방가족
상이등급분류	신체장애기준 9등급	노동장애기준 4등급
유족의 범위	처, 자녀, 손자녀, 부모	처, 자녀
보상의 수준	영예로운생활보장 목표	기존 생활보장
의료보호	4개 보훈병원 운영 / 양질의 의료서비스 도모 / 본인 무료, 가족 감면 / 보철구 지급	건강진단 / 교정기구 무상
교육보호	중, 고 학자금 지원 / 대학까지 공납금 면제 / 사립대 공납금 보조 / 전역군인자녀 수업료 보조 / 보훈장학금	학비 국가부담 / 간부양성소, 기술학교, 전문 학교, 대학 취학 / 영예군인학교 / 11년 무상 교육
직업보호	본인, 가족 직장알선	직업보장, 직업교육 / 취직알선
대부지원	주택시원, 생업지원	주택사용료 면제, 사택제공
보호시설	아동보육소, 양로소	보육원, 초등학교 / 군사(기술)학원 (3년, 2년) / 영예군인공장 · 기업소 / 영예군인보양소 (정양 소 · 휴양소)
기타지원	9개 단체조직 지원 / 복지회관 운영 / 사망시 예우 및 안장지원 / 철도 무임승차 / TV시청 료 면제 / 시내통화료 할인 / 보철구 차량 면 세	애국투사후원회 / 농업현물세, 기타 세금면제 / 식량, 연료, 생필품 배급 / 우선적인 국가배급 / 차량세 면제 / 각급학교 수수료 면제
재원조달	국가재정	국가부담
예산규모	95년 일반회계의 1.6%	
전달체계	국가보훈처	각 중앙부처 및 각급 인민위원회

북한의 사례

북한의 여러 종류 보훈사업중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 (1956. 2. 3. 내각결정 제 10호)

이 법령은 “8·15 전 국내외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8·15후 남한에서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 및 혁명적 투쟁, 민족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 과학, 문화, 예술 기타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로는 다음과 같은 공로금을 받게 되어 있다.

① 남60세, 여55세 이상으로서 노쇠자가 작업할 수 있었던 최근 1개월의 봉급과 내각결정 제32호에 의한 유가족금을 포함하여 그들의 최근 봉급(1개월)액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② 노동상실연금은 질병, 손상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그들의 최근 1개월의 봉급에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회복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급여 승계에 관한 내용을 보면, “공로자가 공로기간에 있어서 보상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로자에게 지급하던 연금은 계속 지급”하며, “공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의 장례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유가족들이 연로, 부상, 질병으로 노동력 상실 및 사망하였을 시는 공로자에게 지급 하던 액의 반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자녀의 교육관련 규정〉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과 애국열사들의 유자녀학원 설치에 관한 결정서〉 (1951. 1. 13. 내각결정 제192호)

이 법령의 목적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열사, 인민군 전사, 하사, 군관 및 빨치산들의 유자녀를 국가 부담으로써 보육 또는 교육하기”위한 것으로 “평양시 및 각도에 유자녀 보육원과 초등학교 및 각 주요한 지대에 군사학교(또는 여자 기술학원)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애국열사, 인민군 전사, 하사, 군관 및 빨치산들의 유가족 중 3세 이상 6세까지의 유자녀는 보육원에서, 7세 이상 12세까지의 유자녀는 초등 학원에, 13세 이상 18세까지의 유자녀 중 남자는 유자녀 군사학원, 여자는 여자기술학원에 수용하여 이를 보육 또는 교육한다” 그리고 이들“유자녀를 수용하는 보육원 및 학원의 명칭은 애국열사 또는 영웅용사의 성명을 부치되 내각의 비준을 받아 이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애국열사, 인민군 장병 및 빨치산들의 유자녀 보육원 및 초등학원, 여자기술학원은 교육성에서 이를 직할하며 유자녀 군사학원은 민족보위성에서 이를 직할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예산안을 1951년 2월 20일까지 내각에 제출할 것을 교육상 및 민족보위상에게 책임” 지우고 있으며 “각 도에서는 보육원 및 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51년 4월 1일부터 개교하게 할 것을 교육상 및 민족보위상 각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책임” 지우고 있다. 법령의 목적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예산은 국가부담으로 되어있다.

열사들에 합당한 예우를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각급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을 훌대하여왔다. 보훈예산이 국가의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에도 훨씬 미달하는 수준에서 생계비 지급과 후생복지비가 책정되었다.

더구나 민주화와 통일운동, 노동운동으로 희생된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부터 국가보훈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친일 경력자가 독립운동가로 둔갑된 사례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4·19혁명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신을 지지한 사람이나, 5·18광주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건국훈장 등 최상급 훈장을 받은 쿠데타 주역들의 서훈을 치탈해야 한다.

아울러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하거나 광주민주항쟁 희생자와 똑같은 치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의 몇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열사·희생자 중 여전히 긴급조치·반공법·보안법·계엄법 등에 의해 ‘범죄자’로 기록된 경우 유죄선고를 무효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의 주관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고 적절한 장소에 위령탑을 세워야 한다.

셋째, 마석 모란공원을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성역화하여 여기저기 산재된 시신을 이곳으로 모셔야 한다.

넷째, 희생자들의 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교과서에 사실을 기록하고 추모주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아직도 생사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의문사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섯째, 진실규명과 국민화합을 위하여 피해자와加害者 그리고 국민대표로서 ‘과거청산과 미래창조를 위한 국민화합 위원회’(기칭) 같은 것을 만들어 피해자의 한(恨)과加害자의 참회가 한마당에서 융화되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잘못된 과거사가 용서받고 새로운 시대가 화해와 통합의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해야한다.

종교를 위하여 죽으면 불교의 이차돈이나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처럼 순교가 되고, 절의(節義)를 위해 죽을때는 순절이 된다. 사육신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 순국이다. 열사·의

사들의 순국은 大義를 창조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위국순사(爲國殉死)가 되는 것이다.

우리 역사는 국가적 위난시에 반드시 자신을 던져 멸사보국하는 열사와 지사, 의사가 나타났다.

따라서 왕조시대에도 열사와 의사 그 유족과 후손을 표창하고 선양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에는 충훈부(忠勳部)라는 기관은 당시 육조에 벼금기는 직관으로서 국가의 보훈행정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었다.

조선시대 영조는 1764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지사들의 충절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과거제도의 하나로 忠良科를 시행했었다. 이 특수한 과거에는 삼화시인 윤집·홍익환·오달제와 김삼용·김상현 등의 후손들에게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후손 중에 유능한 인재를 골라서 중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충신 열사들에 대한 예우와 그 후손들에 대한 각별한 보살핌은 힌말의 동학혁명·의병전쟁·항일투쟁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풍토가 되었다. 이처럼 찬연한 우리 역사의 보훈 정책이 36년간의 망국기와 백색독재,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크게 훼손되거나 그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어 온 것은 부끄러운 노릇이다. 새정부는 역사적 관점에서 민족 민주열사들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과 예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

박정희 정권 아래 93분의 열사들이 분신 등으로 자결하였고, 18분이 타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이 42분에 이르고 있으며, 사법 살인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족민주 운동 과정에서 사고나 병으로 운명한 분들이 73명에 이릅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한국현대사에서 분신, 할복, 투신 자결은 독재권력에 대한 가장 치열한 항거였고, 고문사, 기타 정치적 타살은 독재권력의 폭압성을 온 천하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의 학정과 부패, 악덕 기업주에 항거한 자결, 그리고 그들에 의한 타살은 언제나 크건 작건 독재정권의 균열과 위기를 초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역시 그런 죽음을 계기로 고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진압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전경은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지만 독재권력을 탄도하고 민주헌정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다 운명한 열사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추모 사업도 없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 지 19년이 되었지만 박정권에 저항하다 운명한 열사들의 명예회복은 이후의 어느 정권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시민을 총칼로 살육하고 집권한 이래 수많은 열사들이 폭정에 항의하여 몸을 불사르기도 하였고 그들에 의해 살해되기도 하였지만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범죄 행위가 드러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에 의해 범법자로 낙인찍혀 있는 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이 일부 시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처벌과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과거청산을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1년 여 앞두고 있습니다.

열사들의 피로 얼룩진 20세기를 올바로 마감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희망과 발전, 통일된 조국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에 자주, 민주, 통일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대장정을 함께 걸어온 과정에서 운명하신 열사·희생자들을 우리 역사에 자랑차게 기억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5차례에 걸친 학술회의 참가자들과 열사범추위 상임대표들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1998년 9월 1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 참가자

강만길 (고려대교수, 한국사),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 곽노현 (방송대교수, 법학), 권오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김삼웅 (친일문제연구회 회장, 서울신문 주필), 김선수 (변호사), 김순태 (방송대교수, 법학), 김지형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 연구위원),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배동인 (강원대교수, 사회학), 손석준 (언노련 위원장), 손호철 (서강대교수, 정치학), 안병욱 (가톨릭대교수, 국사학), 양재덕 (민주 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선호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윤기원 (변호사), 이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훈 (변호사), 이윤성 (서울대교수, 법의학), 이창복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이창수 (한국 국제문제연구소 대표), 임재경 (언론인), 장기표 (신문정책연구원 원장), 장임원 (중앙대교수, 예방의학), 정병호 (사월혁명연구소 사회분과위원장),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정태상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천정배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한충목 (열사범추위 집행위원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영준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황상의 (서울대교수, 의사학), 황인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집위원장 역임). 이상 36인 (가나다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악청 열사범추위)

상임대표 이창복, 문정현, 김상근, 청화, 김현, 이해동

① - <당신은> → (11)

사실은 사실은

(당신을) 이는 능력이 있는가? 모른다?
아름다워 가니 알겠어?

국방부 예상이 많았어. 아니면 있는가?

② - 과거증언 ; 라양은 비용 문제.

가거나 놔두거나, 모른다 아니면, 과거증언의 일부로

기억 - 문제의 일부.

기억 - 솔직한 소리 하기 불가능. 험한 경지에 놓여 있다. 2. 100m 12.

선택지에, 예전에, 그때의 문제의 일부.

기억의 일부는 이미 기억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니 좋다.

그럼,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니 좋다.

혹성마지막에 있는 오는 사고가 기억이다.

기억하는 수 있다. 머물다. 머물다 →

(21)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위촉서

귀하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조국과 민족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였기에 분신, 투신 등으로 하니뿐인 고귀한 목숨을 바쳐 가며 독재와 악덕기업주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동료들을 보호하다가, 공권력의 최루탄과 쇠파이프에 맞아, 죽음에 처한 동료를 구하고서, 병 고
칠 틈도 없이 한 평생 운동에 헌신하다가 운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뒤 사고사나 자살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
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4·19, 5·18희생자들을 제외하고 331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투쟁의 최정점에 항상 열사·희생자들이 계셨습니다. 이 분들의 희생으로 조국과 민족은 어둠에서 벗어나 차츰 밝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 등의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아직도 범법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작고하신 문익환 목사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루고자 했던 민족민주열사·희
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를 결성하고, 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가장 원칙적이며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국민
차원에서 중심을 잡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하여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념관, 기념탑 건립 사업, 묘
역 성역화 사업, 국가기념일 제정 사업, 국정교과서에 수록하는 등의 역사 재평가 사업, 유가족 지원 사업, 연구 사업 등의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치러온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가 회를 거듭하여 9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난관이 있었지만 열사·희생자들을 위하는
정성들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범국민추모제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마지막 날
인 9월 19일에 갖게 됩니다.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기금
은 3만원 이상입니다. 개인 신청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고 기금은 온라인 송금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

우)110-542 종로구 창신2동 651-30 (전화) 02-742-3180, 02-764-1684 (팩스) 02-742-3181, 02-743-2835

국민은행 807-21-0462-833 농협 027-12-089168 신한은행 218-12-047067 우체국 010793-0123845 (예금주 이창복)

접수처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추진위원회 특별위원 및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추모위원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직장	성별
직장 전화	지택 전화
우편물수취주소	우(-)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의문사
법제개혁을 위한 제1차 학술학회

<주제발표 1>

인권 자료실		
등록일	등록번호	등급
98 3/11	B122	39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방안과 수순

- 대선국면과 차기정권에서 할 일을 중심으로 -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

1. 문제의 제기

추모단체연대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0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재 타도나 외세 배격, 혹은 생존권 보장등 고도의 정치적 주장과 요구를 내걸고 자결한 열사들이 무려 88명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중 명백한 정치적 탄압은 15건, 정치적 탄압혐의가 짚은 의문사는 모두 47건이 발생했다. 의문사가 모두 정치적 탄압으로 판명나더라도 자결한 수가 탄압된 수보다 훨씬 많다. 세계 민주화 투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특징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감옥내 가혹행위나 전향고문에 대한 단식 항거나 그 휴유증으로 옥중사한 공안관련 장기수들이 무려 85명에 달한다. 이것도 한국에만 독특한 현상이다.

전태일열사는 열악한 노동현실을 온몸으로 고발한 한국노동운동의 불꽃이자 견인차였다. 박종철, 이한열열사는 6월항쟁의 도화선으로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민주화투쟁의 상징으로 새겨져 있다. 분신과 투신은 독재권력의 폭압성에 대한 가장 치열한 항거였고 고문사 기타 정치적 탄압은 독재권력의 폭력성을 온천하에 알리는 사건이었다. 독재정권의 학정과 부패에 항거한 자결과 독재정권에 의한 탄압은 언제나 크건 작건 독재정권의 균열과 위기를 초래하기 마련이었다. 민주화운동 역시 그런 죽음을 계기로 언제나 고양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는 아무런 추모나 예우가 없는 실정이다. 데모를 진압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전경은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지만 독재권력을 타도하고 민주헌정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다 사망한 열사들의 경우 국

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2년간의 군사독재를 뒤로 하고 등장한 문민정부라면 당연히 과거청산을 수행하고 민주유공자를 기리는 것이 마땅하건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 더욱 아쉬운 것은 전노시대에 대한 공식단죄가 이뤄진 이 마당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현 정권의 정략적 단견이 빚어낸 결과로서 전노재판의 의미를 앗아가는 자가당착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현 정권은 지금에라도 전노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단행한 정권답게 본격적 과거청산과 과감한 국민화해 작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현 정권에 요구되는 결자해지의 정신은 전노재판을 정치쑈로 전락시키는 단순한 전노사면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작업의 수행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먼저 지금까지 논의된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고 대선국면과 차기정권에서 이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2.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의 요약

지금까지 두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듯하다.

첫째, 의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 전문적 능력, 강제 조사권으로 무장한 조사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국회보다는 수사기관이 적절한 주체이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가해자의 자수나 목격자의 협조를 위해 과감한 형사면책을 제공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내부비리고발자(양심선언자)보호법의 제정도 도움이 된다.

둘째, 독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거나 목숨을 빼앗긴 열사들과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나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여 국적 차원에서 예우하고 그 유가족에게는 연금 지급, 기타 국가유공자급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들의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가려내야 한다.

셋째, 국가기념일을 제정하여 이들의 공적과 정신을 기려야 한다. 민주유공자 묘역을 만들고 민주화운동박물관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들의 의로운 행적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이들의 이름을 따서 길거리를 명명하는 등 정신계승에도 나서야 한다.

넷째, 이런 작업이 종료되면 독재정권의 수혜자와 피해자간에 일대 화해와 통합을 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속, 수배, 복역중인 일체의 양심수와 독재하수인들을 동시에 사면, 복권하고 민족민주운동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유죄판결을 무효선언하자는 포괄적 청산안이 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3.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법

과거 독재시대의 국가폭력이나 국가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을 진척시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 형사처벌, 민사배상등에 걸림돌이 되는 민형사시효제도에 대한 예외규정과 진실위원회와 특별검사등 진상규명과 역사적 평가를 담당할 특별기구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다. 이중 시효규정과 특별검사규정은 특히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되며 진실위원회의 설치는 총체적 시대상의 규명과 그에 바탕한 열사, 희생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요구된다.

이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총체적, 역사적 차원의 시대 인식과 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진실위원회의 설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법조인 뿐 아니라 정치학자, 역사학자, 민주화운동가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그 추천권은 정부와 정당, 그리고 민주화운동세력등 당사자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 진실위원회에서는 독재시대의 불법과 비리를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독재정권 앞에서 각종 제도와 관행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권력의 압력과 회유에 검경과 법원, 언론과 학계이 어떻게 길들여졌으며 그 결과 어떤 유형의 학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오늘날 이나마의 자유나마 누리게 되었는지를 공식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작업은 특히 열사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의문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사면의 범위, 피해배상과 민주유공자 예우의 정도등 정의와 화해를 위한 제반 조치는 이렇듯 역사적, 사법적 차원의 진상규명이 행해진 후에 강구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차기정권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취지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위헌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데 있다.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그 적용을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취지의 특별법은 소급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도 이런 의견이 5 대 4로 우세한 편이다 (그렇다고 해도 위헌판결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시효배제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원래 인권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공소시효제도와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과거 인권피해의 구제를 방해하는 법원칙으로 둔갑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법치주의적 논리다. 이러한 논리가 극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의 최고 법원칙은 인권보장의 대원칙이 아니라 그 수단이 되는 공소시효와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되고 마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행히 법리적으로는 위헌 주장을 물리칠 두가지 강력한 근거가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공소시효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국가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초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 국가권력이 범죄적 불법을

촉구하고 그에 대해 우호적으로 취급하며 처벌가능성을 배제시킨 경우, 즉 누가 보아도 불법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급입법에 의한 사후처벌금지라는 법치국가적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구동독의 베를린장벽 저격병들에 대한 처벌을 옹호하며 개발한 법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리는 수사 및 사법기구가 제 구실을 못한 독재권력시대의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건전한 법감정과 아무런 모순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비전향장기수를 강제로 전향시킨다는 방침 아래 이른바 교회사를 고용하여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케 한 70년대 중반의 경우 불법적 범죄행위인 전향강제고문에 대해 국가는 이를 공식적으로 촉구되고 형사면책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삼청교육대에서 50여명의 사망자를 낸 범죄적 가혹행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근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민형사시효를 이유로 진실과 정의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는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불의의 극치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문사의 해결을 위해서나 열사, 희생자의 명예선양을 위해서나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진실위원회를 통한 시대적 진실의 규명과 특별검사를 통한 형사적 진상의 규명이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4. 진상규명과 명예선양 후 포괄적 청산

민주화 및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현재 복역중인 모든 사람을 사면, 석방, 복권하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으로 말미암은 과거의 모든 유죄판결도 무효선언하되, 동시에 현재 복역중인 독재주도자와 하수인을 모두 사면, 석방, 복권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기표선생의 포괄적 청산론은 개별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독재체제의 지탱구조 및 반독재투쟁의 전개에 대한 총체적 진실규명과 평가, 그리고 민주열사와 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 등 몇가지 사항을 전제로 할 때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 방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피차간에 여러 가지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차하고 잡다한 실정법의 논리로부터 대승적으로 벗어나 피차간에 대등한 새출발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밖에도 비용이 들지 않고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렇듯 과감한 방안이 과연 요즘같이 민족민주운동이 대중성을 상실하여 거의 고립된 상황에서 또한 민민운동을 불온시하는 정치세력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5. 당장의 대선국면에서 할 일

대선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대선후보에 대한 각종 TV 토론회가 실시되고 있지만 과거 청산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껏해야 전노사면에 대한 입장 정도가 질문되었을 뿐이다. 어차피 과거청산문제가 이번 대선국면의 주요 쟁점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전노재판이 일단락된 지금은 전노재판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레 제기되는 각종 과거청산 과제에 대해 각 정치세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 우선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에 대한 평가 및 예우 방안과 의문사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이 대선과정에서 쟁점의 하나로 부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주제들은 과거 군부독재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민주발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혁, 특히 공안, 사법기구의 개혁방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열사, 희생자, 의문사 문제 외에도 삼청교육대 문제, 안기부법 문제, 과거청산을 위한 시효배제 특별법 제정 문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양심적 비리고발자 보호법 문제, 70년 대의 사상전향강요 고문치사 문제, 조작간첩 문제등을 같이 다뤄야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대선후보들에 대해 공개서면질의등을 통해 입장표명을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향후 대선관련 TV토론회에 시민사회단체 뜻으로 참여하는 패널리스트의 경우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반드시 질의할 것이 요망된다. 끝으로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모단체연대회의 차원이나 인권단체협의회 차원에서 진보적 언론기관이나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신중하게 설문지를 기획, 작성하여 몇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하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도 의문사의 진상이 파묻힌 채로 있고 민주열사, 희생자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채로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87년도의 대선에서 민주진영이 분열하여 집권에 실패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87년 이후 과거청산의 좌절과 왜곡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양김씨가 지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양김씨는 자신들의 분열 결과 노태우정권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한 열사, 희생자 문제와 의문사 문제에 대해 통렬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럼에도 양김씨가 주도하는 현 정권이 전노시대의 의문사 해명과 열사예우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민민운동권도 과거청산의 왜곡과 지연에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87년 이래 국가권력이 제한적으로나마 민주화되면서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방식에 요구되었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고립되고 그 결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분분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 대다수는 현재 이나마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독재정권과 목숨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워 독재정권의 안정적 유지에 크고 작은 위기와 균열을 초래한 열사들과 희생자들 덕분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곧 민민운동을 예우하

는 것과 같다는 인식 때문에 선뜻 내키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기에 민주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는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세력화 및 사회적 책임의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청산과 열사선양의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다소 성급하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향후 과제

양재덕/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치위원장

1. 문제의 제기

이 땅에 민족민주운동이 태동하고, 정착하고, 발전해 온 과정에 때로는 선각적으로, 때로는 치열한 운동의 일선에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혼신과 희생을 통해 열사들이 끼친 영향은 새삼스런 평가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 분들의 삶과 죽음의 궤적은 말 그대로 민족민주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규정하고 있다. 넓게는 일제하에서부터, 해방후 분단하에서 그리고 오늘 민주화운동을 통해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고, 나아가 민주와 통일, 사회진보의 완성을 향해 더욱 전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 분들의 남다른 삶과 지향은 우리 모두를 깨우치고 향도하고 있다.

이제 이 분들의 숭고한 뜻이 하나 둘 현실 속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 사회 발전의 기본적인 자양분이 되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 그리고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선차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다름아닌 이 분들 즉, 민족민주 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그리고 이 분들의 삶의 궤적과 그 지향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조명을 통해 사회발전적 측면에서의 국민적이고 역사적인 계승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기초적인 명예회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들의 정권찬탈행위가 역사적으로 단죄를 받은 마땅인데도 과거 누구보다 앞장서 불의에 항거했던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아직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두 독재자에 대해 근거도 불분명한 사면설이 들출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미완인 채 남아있는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지고 단행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구에 닥칠 민족의 통합도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위에서 비로서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다

진보된 미래사회로 전진하기 위해서도 이 분들의 행적과 삶, 그리고 이 분들이 행한 의로운 실천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조명, 그리고 이의 올바른 계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 민주화운동 혹은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운동이 진실로 각계의 참여와 관심 속에 폭넓게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민족민주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이 문제가 지닌 역사적 맥락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과정 민족민주운동 열사들의 운동적 삶과 이 분들의 희생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간략한 논의를 덧붙이고, 아울러 이를 기초로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운동과 그 과제를 짚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환기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들의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2. 민족민주운동과 열사정신

한국의 현대사를 무엇보다도 역사 주체적인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냉전하 외세의 강권적 개입에 기초한 분단과 독재를 한편으로 하고 이에 대한 민족, 민중의 주체적인 웅전으로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러한 규정외에도 우리의 현대사를 얼마든지 다른 범주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사회적 삶의 연관이 다른 연관에 비해서 갖고 있는 포월적이고 규정적인 의미를 상기할 때 이러한 규정은 우리 현대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지향적 맥락에서 그만큼의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하겠다).

이러한 우리 현대사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외세의 제국주의적 개입과 이에 빌붙어 연명하는 독재정권의 광폭한 폭압통치하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건 생사투쟁의 노선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속에서 수많은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이 역사와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받는 민중의 저항을 대변하고 이들을 역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돌보지 않고 투쟁하였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때로는 스스로가 목숨을 바치는 투쟁으로 때로는 무단적인 탄압 속에서 희생을 당하였다.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은 멀리는 해방 이후 분단정권의 성립과정에 항거하여 민족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다 희생당한 분들로부터 4.19로 이어지기까지 이승만 정권치하에서,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반독재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당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사 전반

에 걸쳐 존재한다. 이 분들이야말로 수십년에 걸친 한국의 현대사를 오늘까지 전진시켜 온 주역들이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의 이만큼의 전진은 이 분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향후 미래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갈 민주노총운동의 기본정신과 지향이 70년대초 고통받는 노동현장의 삶을 온 몸으로 고발하고 산화해간 전태일열사로부터 계승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의 자주 민주통일운동은 해방 이후 민족통일국가 수립운동과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민주와 통일, 민족자주운동의 수많은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학생운동, 노동, 농민 등 각계 민중운동과 사회운동, 그리고 민족민주 운동의 발전을 위해 열사들이 희생을 마다하면서 전개해 온 수많은 조직운동 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분들의 노고와 삶의 궤적은 지금 이 순간 민족민주운동 전반의 조직과 투쟁 속에, 그리고 운동의 계승과 혁신을 위한 모든 논의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비록 아직은 운동과 우리 사회의 발전수준이 이 분들이 뜻한 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민족민주운동이라고 통칭되는 우리 운동이 변혁지향성을 기초로 더욱 발전하고, 나아가 장차 미래의 주역으로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를 진척시키는데 있어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의 그 정신이 밑거름이자 바탕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열사정신은 우리가 본받고 견지해야 할 개개인 한 사람의 활동가로서의 삶의 궤적일 뿐만 아니라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민족민주운동 열사들의 정신과 지향은 우리 역사와 사회의 새로운 변화, 진보를 바탕지우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일정한 시기에 국한되거나 특정 사안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 전반에 걸쳐 명멸한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명예회복과 역사적 복원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난 시기 이념대결의 광폭한 폭력을 앞세운 이분법적인 배제 속에서 역사적 누명을 뒤짚어 쓴 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민족민주 운동 열사와 희생자들의 궤적이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다른 많은 역사적 귀감들과 적어도 동등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민족통합의 원리적 기초를 지난 시기의 대결과 일방의 배제에 기초한 승리 이데올로기로부터 공존공영 쌍생원리로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요, 국민통합과 민족통합에 기초한 새로운 민족사를 개창하는 생산적 과정일 것이다. 이것은 민족민주운동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기도 하다.

3.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운동과 향후과제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운동은 비단 이 분들의 개인적 명예에 대한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의당 이 운동을 열사분들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지향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정신적 자산으로,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복원하고 계승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과정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 부각의 필요성과 같은 정권의 정통성마련이라는 정치적 수준에서 시행된 바가 크다. 이로 인해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본래적인 의미와 과제는 크게 왜곡되고, 치쳐되고 말았다. 이는 동시에 김영삼 정부하에서 시대발전이 치쳐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 자체가 이 정부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민족민주운동과 그 연장에 있었던 국민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 운동에 가장 앞장서 왔고 또한 온 몸으로 희생을 마다 않고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었지만 불행하게도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서 왜곡되고 매도당했던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이 분들의 노고와 지향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정권적 수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문제 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어쩌면 문민정부의 성격이 과거회귀적이거나 현상수준에 머무느냐 아니면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민족사의 영원인 조국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수준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것은 크게 보아 이 정부의 성격을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 내지 과거회귀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였고, 이것은 김영삼 정부의 임기만료를 목전에 둔 지금 자명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평가, 역사적인 계승작업은 아직 미완인 채로 남게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민족민주운동의 미숙함도 큰 봇을 차지했다. 따라서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운동은 현재진행형이며 당연히 우리 운동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며, 나아가 조국의 통일과 국민통합에 기초한 진보적인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하는 출발점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가 더욱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평가, 계승작업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 하에서 치쳐된 민족민주운동 열사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운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이번 대